

**학부 총학생회 감사원-비상대책위원회 미팅 (2차)**

수 신	감사위원 및 비상대책위원 등
-----	-----------------

일 시	2022.08.19 16:00
장 소	화상원격회의

성 원	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감사원 감사원장 심형주		
재 석	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감사원 감사원장 심형주		
지 각		결 석	

회 순	생략
-----	----

부의 안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 및 감사시행세칙 제22조제4항(신설)에 따른 4분기 감사 진행 방식 질의</li> <li>2. 감사위원 인원 증원 논의</li> <li>3. 감사원 회계 방식 논의</li> <li>4. 현행 회계감사 진행 방식 및 징계 관련 세칙 개선 논의</li> </ol>
-------	---

##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 및 감사시행세칙 제22조제4항(신설)에 따른 4분기 감사 진행 방식 질의

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

안건작성자 재정국장 한정현

### 1. 제안이유

- 16-17년도 「학생회칙」 전부 개정(18년도 발효)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, 4분기, 1분기 총 3회 진행됨. (학생회칙 제167조제3항)
-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, 4분기,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. 각각 3월, 9월,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.
  - 중앙집행위원회 등: 상반기, 4분기,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·결산 심의
    - 중앙집행위원회, 동아리연합회, 학부·학과학생회
  - 그 밖의 산하기구: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·결산 심의
- 마찬가지로,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, 4분기,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.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,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.
-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-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.(4분기, 1분기 분할하지 않음)
-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(결산 심의)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, 중앙운영위원회(이하 중운위)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「학생회칙」 및 「감사시행세칙」을 개정함.(아래 3. 참고)

### 2. 주요내용

-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167조제3항제2호(아래 3. 밑줄)의 유권해석안을 중운위에 발의하고자 함.
  -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"의 해석을 기존
- 이에 감사원에서도 회계감사(결산 심의) 주기를 맞출 것을 제안함
  - 단, 회계감사보고서 제작 주기는 기존대로 상/하반기(연 2회)로 하되, 회계감사자료 제출을 상반기, 4분기, 1분기(연 3회)로 바꾸는 안도 가능하다고 봄.

### 3. 참고 사항

#### 제165조(회계연도)
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.
2.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.
  1. 1분기: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
  2. 2분기: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
  3. 3분기: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
  4. 4분기: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
3.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.

---

제167조(심의 원칙)

1. 예산안·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·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,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·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.
2.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, '총학생회비계좌'의 수입·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.
3. 예산안·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.
  1.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
  2.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. 단,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,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
4.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.

---

제22조(회계감사)

1.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·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.
2. 감사원은 「학생회칙」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.
  1. 1분기 검사
  2. 2·3분기 검사
  3. 4분기 검사
3.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,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.
4. 제2항에도 불구하고,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.

---

(회의 속기)

비대위: 예산안 및 결산을 4분기, 1분기 총 2회 제출받음. (예산안은 비대위 측에서 일괄 정리하여 제공 가능) 예산안 심의: 상반기/4분기/1분기 (일부 단체 -> 이번 유권해석 통해서 전체 단체로 확장)

감사원: 이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

논의결과

- 4분기/1분기 예산안 및 결산 2회 제출받고, 감사보고서는 하반기로 제작
- 각 예산안은 비대위에서 수합하여 제공

안건제출자    감사원장 심형주

### 1. 제안이유

- 학부총학생회:감사시행세칙 제 3장 17조

<p><b>제3장 감사, 제1절 통칙</b></p> <p><b>제17조(감사 분류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기감사: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</li> <li>2. 특별감사: 제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하거나,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사안에 관련한 특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</li> <li>3. 일상감사: 본 세칙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</li> </ol> </li> <li>2. 감사는 다음 호의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계감사: 회계·결산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검사</li> <li>2. 직무감찰: 사무 및 위원의 직무 적절성 감찰</li> <li>3. 감사는 서면감사·실지감사·출석답변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시행한다.</li> </ol> </li> </ol> <p><b>제21조(제보 및 조사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.</li> <li>2.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,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li> <li>3.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.</li> </ol>
--

- 감사원장, 총무, 인사담당자. 매 학기 실행하는 정기감사로 현 3명의 역할 포화 상태
- 21조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인식 및 제보 미미, 학생사회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인식 개선 및 제보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
- 특별감사, 일상감사를 홍보 및 제보창구를 담당하는 감사원 인원 증원

### 2. 주요내용

- 이에 따라 감사원의 총 인원을 6명 → 8명으로 늘리고자 함
- 새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의 주요 업무
  - 정기 감사의 분담
  - 제 21조에 대해 본회 회원들에게 홍보 시행
  - 본회 회원의 “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사실” 을 제보 받는 창구 마련
  - 받은 제보 취합 및 감별 후, 감사원 내에서 특별 감사에 대한 제안 및 진행을 총괄

(속기)

비대위: 감사 업무의 로드를 이해하므로 증원 자체는 다들 공감할듯 8명 괜찮은지?

감사원: 8명으로 괜찮을듯

8월 정기 중운위: 세척 개정안 발의 (매달 넷째주 수요일)

9월 정기 전학: 세척 개정안 심의 -> 의결 -> 공포 -> 5일 후 발효, 기존 회칙대로 감사위원 3인 인준

이후 2인을 추가 인준 (전학대회, 서면의결 가능)

—

감사보고서 일정 (대략)

학기 전 매뉴얼 배포 (다음주 토요일까지 초안 제작, 일요일 배포)

학기 시작하고 제출 받기 시작 ~ 둘째주까지 제출 (2주)

정기 감사 기간: 2주

—

정리

금일 중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

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개정안 서류 작성

수정하여 일요일까지 안건 제출

안건제출자    감사원장 심형주

### 1. 제안이유

- 현재 감사원의 재정이 중앙회계로 부터 명시적으로 배정되어있지 않아 “독립적 운영”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

## 제2장 감사원

### 제16조(재정)

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
### 제34조(회계감사보고)

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피감기관의 수입·지출의 결산의 확인
2.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, 주의 항목
3. 유책(有責) 판정과 그 집행 상황
4.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
5.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
6.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### 2. 주요내용

- (제안 사항1)
- (1) 감사원 회의비, (2) 리크루팅 홍보비, (3) 특별감사, 일상감사 제보 방법 및 필요성 홍보 대한 사업비를 다른 피감기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회계로 부터 직접 배정받고자 함

(속기)

중앙회계 기한 내 신청 -> 집조위/중운위 거치면서 예산안 확정

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

안건작성자 재정국장 한정현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회계감사자료에는 예산안이 필수가 아니므로 "심의없는 예산 집행" 등의 감사 항목을 회계감사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임.
- 「학생회칙」, 「재정운용세칙」 및 「감사시행세칙」에 규정된 징계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부실한 상황.
- 「감사원규칙」 및 「감사시행규칙」은 현재 제정되지 않은 상황.

### 2. 주요내용

- (제안 사항1) 정기회계감사 시, 해당 분기 예산안을 필수 제출로 변경.
  -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 집행(심의없는 예산 집행) 시 감사 점수 감점 및 징계안 발의 등의 조치가 가능함.
- (제안 사항2) 「감사원규칙」 및 「감사시행규칙」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회계감사 업무 수행.
  - 관련 업무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중운위 등 의결기구에서도 협업 가능함.

### 3. 참고 사항

방식(제출 자료)	감사의 정교함	예외 사항
결산표만 봄	☆☆☆☆☆	표대로 지출 안할 수 있음
결산표 + 통장거래내역을 봄	★☆☆☆☆	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음
결산표+통장거래내역+통장사본을 봄	★★☆☆☆	(횡령을 못 막음) 세 자료의 숫자는 맞더라도 그 금액으로 다른것을 구입할 수 있음 ex) 예산 - 포스터 출력 5만원, 실 지출 - OO인쇄소(실제는 친구 통장)으로 5만원 출금 내역
결산표+통장거래내역+통장사본+증빙자료(보통 영수증)	★★★☆☆	예산대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 (현행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감사 방식)
예산안+결산표+통장거래내역+통장사본+증빙자료(보통 영수증)	★★★★☆	비법인(비사업자대상)거래에 대한 불투명성



(속기)

비대위: 감사원 내부 감사용 매뉴얼이 있는지?

감사원: 내부용 매뉴얼 별도로 존재

비대위: 내부용 매뉴얼에 이번에는 제출받는 예산안도 함께 대조하게끔 안내하면 좋을 듯

감사원: 그렇게 하겠음.

서명: 감사원

위원장

심형주

(인)



서명: 비상대책위원회

재정국장

한정현

J.H. Han